

한국서양고전철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1. 본회는 한국서양고전철학회라 칭한다.
2. 본회의 영문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for Western Classical Philosophy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서양 고전 철학 전반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기적, 비정기적 학술 연구모임 개최
2. 학회지 및 연구간행물의 발행
3. 공동연구의 수행 및 지원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합당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제5조 (정회원)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서양 고전 철학 분야에서 연구 역량 및 경력을 갖춘 자로서, 본회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준회원)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중에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제7조 (가입)

정회원, 준회원의 가입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임원의 선출 및 피선출권을 가지며, 총회에서 본회의 제반 사무를 심의 의결한다.
2.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기 구

제9조 (기구)

본회에는 회원총회와 상임이사회를 둔다.

제10조 (총회)

1. 회원총회는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최고의결권을 가진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정회원 1/3이상의 요청 또는 회장이나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임원)

1. 본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총무이사 1인
 - ③ 이사의 위촉은 회장이 하며 학회 운영의 필요에 따라 연구, 섭외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이사를 따로 둘 수 있다.
 - ④ 감사 2인
2.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선출)

1. 회장은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 또는 위촉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각종 회의의 소집 및 주재권을 가지며, 본회의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2. 회장과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사업을 계획하고 심의한다.
 - ① 총무이사는 본회의 일반적인 사무와 학술업무 전반 및 회계를 담당한다.
 - ② (필요시) 연구이사는 본회의 연구발표를 비롯한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 ③ (필요시) 섭외이사는 학회의 학술 및 행정에 필요한 각종 섭외 업무를 담당한다.
 - ④ (필요시) 기타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기타 업무를 협의 심의한다.
3. 감사는 매 회계연도 말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 정

제14조 (수입과 회비)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장 회칙 개정

제16조 (회칙 개정)

회칙 개정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6년 12월 3일부터 발효한다.

2021년 2월 24일 개정

(1)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개정

(2)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개정